

제38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7. 4. 3 (금) 07:30~09:05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참 석 : 12명

(협의사항)

1. 적체 진료비 지급 책임소재 규명

현행 법령상(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 2 참조)「직종의료보험 조합이 해산될 경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채무를 변제케되어 있기 때문에 적체 진료비의 청구는 당해 청산조합의 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야 된다」는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의견은 결과적으로 요양취급기관만 손해를 감수해야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국가가 지불보증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2. 지부 활성화 추진

본회가 정책건의 단체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금년도에는 지부기능 강화와 업무 증진등 지부 활성화에 보다 역점을 두는 한편, 본회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지부활성화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부활성화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3. 병원회보 창간 기념 축하연 연기

병원회보 창간 1주년 기념 축하연은 본회 행사 사정상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대신明年的 창간 2주년 기념행사를 보다 성대히 개최키로 협의하다.

4. 전주예수병원 노조 결성에 관한 대책

전주예수병원의 노조 결성에 대한 본회 의견을 취합하는 문제는 실행이사들이 동 안건을 검토한 후 차기 실행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하다.

(승인사항)

1. '87년도 예산(안) 상정 승인

'87년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고받은 다음 토의한 결과, 세부적인 예산내용의 조정은 관련이사 및 사무총장에게 위임키로 하고, 동 예산(안)을 차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승인하다.

2. 정관 개정(안) 상정 승인

지부의 호칭을 병원회로 변경호칭,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면제, 부회장 3명 증원 및 임명직 상근 부회장제도 신설과 실행이사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차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키로 승인하다.

3.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상정 심의

신현탁 부회장께서는 본회 규정별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이 있는 후, 주요 변동내용에 대해 토의한 결과 2급직원의 연령정년을 종전과 같이 60세로 환원하며 직제중 행정실로 개칭키로 되었던 기획관리실의 명칭 및 소관업무는 현행대로 두기로 협의하고, 신규정 적용으로 인해 급여가 현수준보다 감액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향후 1년간 현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경과 규정에 반영하는 문제와 상근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단 및 관련이사가 검토한 다음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 협의키로 하다.

제 39 차 실행이사회(제 4 차 상임이사회)

○일 시 : 1987. 4. 10 (금) 16 : 00 - 19 : 40

○장 소 : 본회 대회의실

○참 석 : 19명

(협의사항)

1. 전주 예수병원 노조결성 대책

전주 예수병원의 일부 직원들에 의한 노조결성 추진에 대해 토의한 결과 병원은 환자진료를 일시적이라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에 긴밀한 노사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타결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취지의 본회 의견을 해당병원에 회신키로 하다.

(승인사항)

1. '86년도 예산결산 심의 승인

'86. 4. 1부터 '87. 3. 31까지의 본회 일반예산 총수입 706,759,951원, 총지출 683,907,362원, 차입잔액 22,851,589원인 결산 보고와 '83 4.1부터 '87.3.31까지의 본회 회관건립특별회계 총수입 1,145,205,688원, 총지출 633,992,978원, 차입잔액 481,212,710원인 결산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 동 3개 결산서를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다.

2. '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상정 승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총액 775,195,000원 및 병원회보 소요예산 420,580,000원에 대한 내역보고를 받고 신년도에는 회비를 인상시키지 않는 대신 병상 증가분과 미납회비 납부를 제고와 회보 광고수입률을 제고시켜 자립 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고 동 2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정관 개정(안) 상정 요인

지부호칭 변경,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면제 가입과 정회원제도 개정, 부회장 3명 증원 및 상근부회장 제도 그리고 실행이사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정관개정(안)을 비공개리에 심의한 결과, 본회 회원이 아닌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문제등에 하자가 없도록 회장단과 사무총장이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정관개정(안)을 재수정하여 차기 전체이사회에 상정키로 승인하다.

4.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상정 승인

심의를 앞서 사무국 직원을 퇴장시킨 다음 비공개리에 신현탁 부회장
께서 본회 규정별 주요제정 및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는 후 동
(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차기 전체이사회에 상정 심의키로 승인하
다.

5. 총회 토의안건 상정 승인

전국 6개 지부에서 건의한 총회 토의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차
기 전체이사회에 상정키로 하다.

6. 총회 개최 일정 변경 승인

전남 광주에서 개최할 본회 제28차 정기 총회 일정 '87. 5. 6~5.7을
'87. 5. 7~5.8일로 1일간 순연 변경키로 승인하다.

7. 이사 보선

유재덕, 정환영, 이태호, 하재창, 조진규 및 강치명 이사의 병원장 사임
에 따른 후임이사에는 관례대로 그 후임인 신정순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
원장, 고응린 한양의대부속병원장, 황일우 경희의대부속병원장, 오준섭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안창일 경희의대부속병원장 및 김병찬 제주한라
병원장을 선임키로 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다.

제 40 차 실행이사회

- 일 시 : 1987. 4. 17 (금) 07 : 30 - 09 : 10
-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 참 석 : 11명

(협의사항)

1. 정관 개정(안) 재심의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재상정한 동(안)을 심의한 결과, 제 7 조
회원의 종류에 있어 병원 의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준회원

1879년 5월 1일

과 명예회원은 10인이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은 병원장이 아닌 회원이 회장도 될 수 있고 그 임기도 무한정 가능하게 되므로 법률고문의 자문을 다시 받아 수정(안)을 차기 전체이사회에 상정키로 하다.

2.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재심의

비공개리에 재심의 결과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의견 가운데 아래 사항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하고 동 개정(안)을 차기 전체이사회에 상정키로 하다.

■編輯委員：韓斗鎮·朴利甲·金世民·黃泰植·林隆義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44 號)

'87년 5월호(月刊)

등록일자: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제 라 1691호

인쇄일: 1987년 4월 30일

발행일: 1987년 5월 1일

發行人: 白樂院

編輯人: 黃泰植

印刷人: 朴善奎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1 전화: 718-7532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6, No. 5

May 1987

Publisher: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Mapo Hyun Dai Bldg.)

35-1, Mapo-dong, Mapo-gu,

Seoul 121, Korea TEL. 718-7532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본회의 公式의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